

전기통신 형식승인 상호인정 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

正會員 김 영 태*, 박 기 식**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Model of Mutual Recognition for
Type Approval System of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s

Young-Tae Kim*, Ki-Shik Park** Regular Members

요 약

최근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자유무역 물결이 전기통신장비 분야에도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수출·입은 각국의 통신환경마다 고유한 규제 즉,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제도가 결집들이 되어 왔으나, 상대국의 형식승인제도를 쌍방간의 일정한 합의와 원칙에 의해 서로 인정(이하 “형식승인 상호인정”으로 표기)함으로써 전기통신장비의 무역확대와 함께 기술교류 등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교역질서의 창출을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식승인 상호인정제도의 분석과 각국간에 추진되고 있는 그 사례분석을 통한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형식승인 상호인정 모델 정립의 일반화를 시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 추진절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With the launch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system, National and international trends toward more liberalized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s drive the globaliz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Despite of such trends, most countries have long viewed the type approval system as a major hindrance to overseas marketing because of a hodgepodge of diverse type approval system of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s in each country.

But, recently, many countries under these situations try to make a better understanding of respective requirements of each country's type approval system, and where possible to strengthen commonalities, through referred to as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체계연구실 선임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체계연구실 책임연구원/실장

論文番號:96247-0812

接受日字:1996年 8月 12日

"mutual recogni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the development of procedures for harmonization of type approval system in "one world, one market".

Thus, this paper covers the definition, considerations and the case studies of mutual recognition between countries. Also, this paper suggests the desirable and general model of mutual recognition to be applied all the countries, which are being preparing and processing it.

I. 서 론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과 더불어 자유무역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전기통신장비에 대해서도 개방의 압력이 거세어지는 등 통신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국제 통신환경을 자국 정책에 반영하고, 개방된 전기통신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과거의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기통신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등의 통신정책을 전환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기통신 자유무역의 판단이 되는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제도(Type Approval System)는 몇년 전만 하더라도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 규제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형식승인제도는 "일차적으로는 각국의 기반통신시설인 공중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전기통신장비에서 야기되는 각종 위해(Harm)로부터 공중전기통신망을 보호하고, 이차적으로는 전기적 안전(Safety)의 관점에서 전기통신장비 이용자 및 통신망 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기준 만족여부 확인과 관련 요구조건들이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것에 대한 인증 부여"라는 기본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장비의 수출·입시에는 자국의 통신시장 보호 및 통신망 보호 차원에서 언제나 통상마찰과 갈등이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마찰과 갈등은 통신시장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으로 인해 선진국보다 열악한 통신환경을 갖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게 더 큰 통상 부담이 되고 있다[1-2].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이 함께 참가하는 APT(Asia Pacific Telecommunity)와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의 통신협의체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통신질서에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 등 모든 국가가 공존·공생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가간의 동등한 경쟁조건 확보와 상호호혜주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각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통신장비의 형식승인제도를 "쌍방간의 일정한 원칙과 합의"를 통해 서로가 인정하자는 이른바 형식승인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3].

이러한 전기통신장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통해 각국은 형식승인제도의 기술적 규제사항인 기술기준(Technical Standards)¹⁾을 서로 조화(Harmonization) 시킬 수 있다. 기술기준의 조화를 통한 상호인정은 전기통신장비의 수출·입시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장비에 대한 자국 및 상대국에 의한 기술기준의 중복 시험 비용 억제 등)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형식승인 상호인정은 이와 같은 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의면함으로써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진행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고 분석될 수 있다[1], [3].

첫째,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은 자국의 통신환경을 고려하여 정부와 장비 제조업체간의 충분한 사전 검토협의를 토대로 추진이 되어야 하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 대부분 정부간 추진이 먼저 결정됨으로써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따른 수혜 당사자인 장비 제조업체 등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1) 일반적으로 정부가 강제적 구속력을 행사하며, 세부적으로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공통된 판단과 평가 근거가 되는 조건, 수준, 한계 등을 규정함.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령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미국의 "FCC Part 68(전화망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기술기준)", 일본 우정성의 "단말설비 등 규칙" 등이 여기에 속함[4-6].

둘째, 각국마다 처한 통신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형식승인 상호인정이 자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 측면의 우려가 팽배해 있다는 점.

셋째,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선진국과의 협상시 그 결과에 대해 상호인정의 기본원칙인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시장 호혜 원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넷째, 형식승인 상호인정이 강제적 정책사안이 아니고, 이의 시행에 따른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다섯째, 형식승인 상호인정의 완전체결 및 실무적 후속조치 이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²⁾ 될 수 있다는 점(이것은 각국의 상이한 제도 및 기술기준을 조화시키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이유 외에 형식승인 상호인정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한 기본개념 부재와 추진방법이나 절차 등 전반적인 형식승인 상호인정의 Know-How 부재도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도 자유로운 교역을 통한 동등한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한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각국간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식승인 상호인정 모델 정립의 일반화를 시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 추진절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형식승인 상호인정의 기본개념

1. 정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식승인제도의 내용과 운영방법의

파악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형식승인 상호인정은 결과적으로 형식승인제도를 상호간에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식승인제도는 앞에서도 일부 언급했지만 자국의 통신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주도³⁾로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첫째, 공중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전기통신장비가 만족해야 할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둘째, 이러한 기술기준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인정하고, 셋째, 시험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를 인증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형식승인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3].

형식승인 상호인정은 각국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형식승인제도의 세부사항들에 대해 양국이 전기통신장비의 자유교역을 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장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화시켜 나가는 이른바 두 국가간의 형식승인절차를 하나의 형식승인절차로 만들어 운영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형식승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식승인 상호인정은 “One World, One Market”이라는 개방된 통신시장 환경에서 각국의 상이한 형식승인제도를 조화시켜 나가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하나의 조화된 기술기준에 의한 한번의 시험 즉, “One Standard, One Test”를 추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논의되고 있는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한 형식승인 상호인정의 기본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2가지 형태로 구분·추진된다고 할 수 있다.

① 상대국 정부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의해 전기통신장비가 시험되어 그 시험성적서가 상호인정되는 시험성적서 인정: 이 형태는 상대국의 지정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자국의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간 형식승인 상호인정 형태임. 이러한 방법의 상호인정은 현행 관련 법·제도 등의 규정 개정없이 가능함.

2) 한 예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자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한 형식승인 상호인정은 1994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했으나, 미국과 멕시코는 기술기준 시험을 위한 양국간 시험기관지정 계획을 1998년 1월 1일까지 작성·합의하기로 하는 등 실무차원에서의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음[7].

3) 선진국에서는 이 부분까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게 민간 주도로 정책을 바꿀 것을 종용하고 있어 통상마찰의 한 쟁점이 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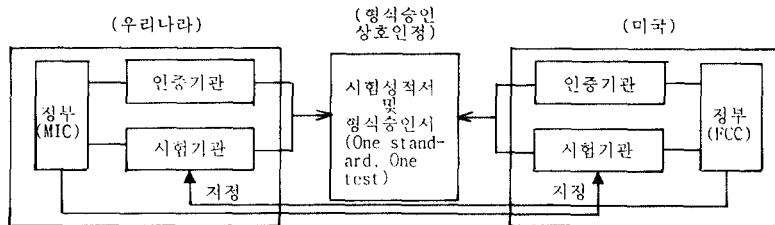


그림 1. 형식승인 상호인정의 기본 추진 형태(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예)

Fig. 1 Basic process types of mutual recognition(As an example between Korea and U.S.A.)

② 하나의 조화된 형식승인제도하에서 발급된 형식승인서를 상호인정하는 형식승인서 인정: 이 형태는 양국간의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법령 조화(즉, 기술기준 조화 등)를 통한 형식승인절차에 의해 발급된 형식승인서를 상대국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방법의 상호인정은 현행 관련 법·제도 등의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함.

2.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

형식승인 상호인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이 가져다 줄 영향을 서술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한 추진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기존에 전기통신장비를 수출할 경우, 상대국의 형식승인제도에 의한 까다로운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가지의 제도적·기술적 장벽에 부딪히곤 하였다. 그러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추진한다면 상대국(수입국) 정부가 지정한 자국(수출국)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대행함으로써 전기통신장비의 시험에 따르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됨은 물론 이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및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수출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형식승인 상호인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2], [8].

① 긍정적 측면

형식승인 상호인정으로 각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긍정적 측면은 통신시장이 확대됨에 따른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다 쉽게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관련 산업의 육성과 국가간 협력체계를 통한 경제통합 모색이 현안 문제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선진국의 기술기준을 자국의 기술기준과 조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기술기준의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또 다른 긍정적 측면으로는 각종 관련 자료의 교환이 용이하게 이루어져 상대국의 형식승인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상대국에 대한 적시의 통상 대응 및 협력이 가능하다.

② 부정적 측면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에 대한 가장 큰 부정적 측면은 자국의 형식승인제도 내지는 전기통신기술기준의 수준이 상대국에게 완전 노출됨으로써, 기술력 등 제반 통신환경이 열악한 국가는 국력이 강하고 자본이 많은 국가에게 자국의 통신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내포되어 있다.

III. 각국의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 사례분석

1. 형식승인 상호인정 동향

형식승인 상호인정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등 국제기구와 최근의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한 APT와 APEC 등의 통신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ISO는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의 지침서에 관련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형식승인 상호인정 내지는 형식승인제도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국제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11].

①지침서 25:교정 및 시험기관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②지침서 38:시험기관의 인정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③지침서 43:시험기관 숙련도 시험의 개발 및 운영

④지침서 58:교정 및 시험기관 인정제도 운영방안

따라서, ISO에서는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한 최종 협정체결은 각국간의 무역장벽에 대한 문제의 일부를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형식승인 상호인정 협정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항목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표 1. OECD의 주요국에 대한 형식승인 상호인정 의견 조사
Table 1. Survey of opinions for mutual recognition process in the OECD member countries

국가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	비고
미국	찬성	FCC, 통신사업자, 제조업자 등 협력체계 강화
호주	찬성	지역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
캐나다	찬성	미국의 시험기관을 지정해 오고 있음
독일	찬성	역내 국가들과 형식승인서 및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추진
일본	원칙적으로 찬성	아직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영국	찬성	역내 국가들과 형식승인서 및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추진

4) 구체적으로는 1) 협정에 참여하는 기관을 구속하는 개인 및 서명자의 신분, 2) 각 서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술, 2) 협정 범위, 3) 서명자가 따라야 할 요구사항, 4) 각 국가간의 업무 이행에 대한 감시, 5) 불만사항이나 이의신청의 취급방법, 6) 해당 당사자국의 신뢰도와 보험에 관한 가능한 요구사항, 7) 협정의 수행사항이나 개정사항, 8) 의사전달을 유지하기 위한 협약 사항, 9) 비밀사항 및 안전성, 10) 협정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5) APEC으로부터 위탁받아 호주의 전기통신공사청인 AUSTEL (Australian Telecommunications Authority)이 수행중인 이 연구의 제목은 “Development of Draft Model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로써, 연구기간은 199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예정이었으나, 각국의 의견수렴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최종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임.

OECD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이 분야를 큰 이슈로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92년 OECD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형식승인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형식승인 상호인정의 추진에 찬성하였으며, 그 시기와 방법 등을 주요 현안 문제로 지적했다[1].

APT 및 APEC은 과거의 ISO나 OECD에서 노력해온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각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재정립함과 동시에,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각국의 의견수렴을 통한 각종 지침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APEC은 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 협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식승인 상호인정 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모델”을 개발⁵⁾ 중에 있으며, 이것은 다음의 3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할 수 있다[10].

① 각국의 형식승인제도의 운영 항목과 본 협정모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항목들과의 일치 여부 조사 차원

② 각국의 형식승인제도 운영 현황을 통해 양국간 또는 다자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공 차원

③ 국가간/지역간의 통신협상을 통한 전기통신 기술기준 내지는 형식승인제도를 조화함으로써 상호이익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차원 등이다.

2. 사례분석

형식승인 상호인정은 각국마다 그들이 처한 통신환경 내지는 통신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의 협상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① 쌍무협상(Bilateral Negotiation):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당사자국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짐. 그러나, 이 협상은 주로 당사자국간의 기술기준 차이, 협상 경험 부족 등이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② 다자간 협상(Multilateral Negotiation): 여러 국가가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논의 하는 것으로, 선진국의 일방적인 강요로 인한 쌍무협상의 단점을 보완하고, 비슷한 통신수준을 가진 국가간 통신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WTO의 기본 원칙이기도 함.

③ 지역 국가간 협상(Interregional Negotiation): 지역의 경제적 이익 추구 목적으로 자국이 속한 지역 국가간 그룹 형태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이 그 대표적인 예임.

이러한 협상형태에 따라 지금까지 각국이 노력해온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의 자유무역 추진에 관한 통상정책은 한편으로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를 통한 다자간 협상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쌍무협상과 지역 국가간 협상을 진행하는 등 미국 주변 지역국가부터 자유무역을 확대해 간다는 양면적인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1989년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을 멕시코까지 확대하여 북미 지역에 대한

지역 경제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⁶으로 하고 있으며, 이 협정의 전문은 8개의 부문(Part), 22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1994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 세부 내용은 GATT상의 자유무역 지역 요건인 지역내 관세·수입 수량 제한의 철폐에 국한하지 않고 시장 액세스, 통상규칙,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처리, 금융, 섬유, 정부조달의 제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7], [11].

특히, 이 협정의 제13장(10개 조항으로 구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형식승인 상호인정은 각국의 통신환경은 비슷하나 통신수준이 각국마다 상이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3국의 전기통신 기술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북미 3국은 다음과 같은 다단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북미 3국간의 전기통신 기술기준 조화를 위해 각국의 통신 관계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전기통신 기술기준 연구위원회”(TSS: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Subcommittee) 설립·운영

② 전기통신장비에 적용할 기술기준의 명확한 목표⁷ 설정

③ 전기통신기술기준 조화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미국과 캐나다간부터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화된 기술기준으로 멕시코와 최종적으로 기술기준이 조화되어야 할 것(멕시코의 기술수준이 후진국임을 감안) 등.

그러나, 북미 3국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을

6)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각국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미국의 경우는 EU 통합 및 일본의 경제권 확장 견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의 협상력 제고, 미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역 개발 촉진, 멕시코의 경제 성장에 따른 멕시코 시장 진출기회 확대 고려;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 견제, 기존의 미국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의 기득권 유지, 캐나다의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멕시코 시장 진출 확대 고려; 멕시코의 경우는 고도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미국과 캐나다의 기술 및 자본의 유치, 미국과 캐나다의 시장 접근 기회의 확대로 경제 성장의 가속화와 정치적 안정기대 등을 고려함[8], [11].

7) 각국의 입장을 대표하여 대변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각국의 전기통신장비를 전기통신기술기준 조화에 의해 상호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 프로그램 개발, 전기통신장비 또는 서비스에 대해 기술기준 관련 조치사항 전담, 각종 포럼 등에서 각국 또는 비정부 표준화기관이 수행한 관련 업무 전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그 산하에 적합인증 분야, 장비의 전기적안전 분야, 서비스제공 분야, 단말장치 접속 분야, EMC 분야 등 5개의 실무그룹으로 구성되는 CCT(Consultative Committee on Telecommunications)를 운영함으로써, 북미 3국간의 전기통신 기술기준 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8) 북미자유무역협정 Part 5, Chapter 13의 제1304조에는 공중전기통신망에 대한 기술적 위해 방지, 공중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간섭(방해) 또는 품질저하 방지, 전자파간섭 방지, 다른 전자파 스펙트럼 이용과의 양립성 보장, 과금장치의 오동작 방지,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전기적안전 및 액세스를 보장할 수 있는 기술항목으로 기술기준이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

위한 걸림돌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현저히 기술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멕시코와의 통신환경 조화방안이다.

따라서,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형식승인 상호 인정이 체계적으로 잘 극복될 경우 선진국간 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상적인 추진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호주와 EU간

호주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은 연방정부의 위임하에 AUSTEL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AUSTEL은 각종 포럼 및 관련 활동의 능동적인 대처로 대외적인 위상 또한 높다.

EU 역시 최근 유럽통합을 계기로 거대한 단일 시장을 형성하면서 북미지역 내지는 아·태지역과 활발한 무역교류가 진행중에 있다. EU의 형식승인 상호 인정은 1991년에 제정된 “적합성에 대한 상호인정을 포함한 전기통신장비에 관련된 회원국의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에는 유럽공동체 평의회가 유럽공동체 역내의 경쟁적 전기통신장비 시장 개발에 필수적인 조치로써, 형식승인에 대한 완전 상호인정의 도입 촉진을 꾀하는 전기통신 서비스 및 장비의 공동 시장 개발에 관한 녹서를 발행하고, 이사회는 유럽 공통의 전기통신기술기준 개발에 입각하여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전기통신 정책의 주요목표로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12].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호주와 EU간에는 시험성적서만 상호인정 한다는 합의 아래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본 원칙을 체결했다.

① 양국은 형식승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제기관을 가질 것

② 양국은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에 의해 지정되는 시험기관을 인정할 것

③ 양국의 시험기관 지정 프로그램⁹⁾은 반드시 국제 기준에 근거하여 운영할 것 등이다.

그러나, 완전한 형식승인 상호인정은 형식승인서의 상호인정이라고 보았을 때, 시험성적서만의 상호인정은 다소 미흡한 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기통신기술기준이 상이한 모든 국가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다. 호주와 뉴질랜드간

호주의 적극적인 형식승인 상호인정 노력의 일환으로 1981년 8월, 인접 지역 국가인 뉴질랜드와의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8개의 협정 조항을 체결했다.

① 상대국의 지정시험기관 인정은 자국의 지정시험기관 인정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할 것

② 자국의 지정시험기관에 의해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상대국의 지정시험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도 상호인정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할 것

③ 각각의 시험기관 지정 프로그램으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양국이 인정하며, 이에 대한 사실을 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기관 및 직원)에게 권고할 것

④ 각국은 지정시험기관의 등록조건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⑤ 양국의 시험기관 지정절차간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한 개발 및 채택에 협력할 것

⑥ 양국은 시험기관의 평가방법에 대한 개발 및 채택에 협력해야 하며, 특히 효율적인 시험 프로그램의

9) 호주의 시험기관 지정 프로그램은 AUSTEL이 국내의 국립시험기관검사협회 (NATA: National Association of Testing Authorities)와의 양해각서 체결(1992.11.) 이후, NATA와 시험기관 지정 프로그램의 협정 체결에 따른 다음 국가의 시험기관을 AUSTEL이 지정하고 있음(6개국 7개 프로그램). 즉, 미국의 AALA (American Association of Laboratory Accreditation)와 NVLAP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영국의 NAMAS (National Measurement Accreditation Service), 홍콩의 HOKLAS (Hong Kong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뉴질랜드의 TELARC (Testing Laboratory Registration Council of New Zealand), 스웨덴의 SWEDAC (Swedish Board for Technical Accreditation), 네덜란드의 NKO/STERIN/STERLAB (Nederlandse Stuhsing Boor de Erkenning van Kalibratie en Testlaboratoria en Enspectie Instellingen) 등[2].

개발시 협조할 것

⑦ 양국은 국제적으로 시험기관 지정의 원칙에 대한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고, 시험기관 지정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협력할 것

⑧ 본 협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협정을 종료(무효화)하기를 회망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가 발효하기 3개월전에 서면으로 상대국에게 전달하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최근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 과정에서 이용자의 전기적안전에 관한 전기통신기술기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화를 이끌어 냈으며, 이러한 전기통신기술기준의 조화 작업은 지역적인 환경에 의한 비슷한 통신환경을 고려해 볼 때 머지 않아 전체적인 전기통신기술기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 국내 현황 분석

국내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은 1992년 3월, 전기통신 장비 및 서비스 시장의 주요 부분에 대해 경쟁을 도입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¹⁰⁾에 기초를 두고 있다[13]. 이 MoU에 따라 미국이 우리나라의 통신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1994년 말, “한·미 정부간 전기통신장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한 협상 제안서”를 작성하면서부터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이해 당사자중의 하나가 될 전기통신장비 제조업체 와의 사전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공청회에서 우리

나라는 다음 3가지의 사항을 확인하게 되었다.

① 형식승인 상호인정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점: 이것은 형식승인 상호인정이 무역교류 확대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없이 무조건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선진국에 의한 국내 시장의 잠식을 야기시키는 역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다른 국가들의 상황 추이를 보아 결정해야 한다는 대부분 대기업의 입장으로 나타났음.

②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추진하되 시험성적서 상호인정만 하자는 부분적인 상호인정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점: 이것은 통신시장 개방으로 인한 선진국 장비의 국내 수입에 따른 기술파급 효과를 최대로 줄이기 위한 대부분 시험기관의 입장으로 나타났음.

③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는 점: 이것은 형식승인 상호인정이 추진됨으로써 오히려 장비의 수입이 보다 원활하게 될 수입업체의 입장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정부는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에 대한 관련 업체와의 부족한 호응에서도, 형식승인 상호인정은 시대의 흐름이며,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관련 제도의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1995년 12월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형식승인 상호인정 협상을 최소 한번이라도 할 목표 아래 추진하는 계획(안) 작성과 함께, 1995년 4월에는 이를 지원할 국내의 형식승인 관련 시험기관¹¹⁾, 연구소 등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형식승인 상호인정 전담반”을 <표 2>와 같이 발족·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는 미국의 FCC (Federal

10) 양해각서에는 우리나라 및 미국의 전기통신장비 및 서비스 시장, 시장구조에 대한 특징, 시장의 참여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규칙, 정책 및 일반적인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간의 무역에 있어서 형식승인제도로 인한 기술적인 장벽을 줄이기 위해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통신협상시 미국에 먼저 요청하였던 사항임.

11) 1996년 6월 현재, 국내 형식승인 시험기관은 한국통신(품질보증단), 테이콤(시험검사소), 생산기술연구원(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삼성전자(CS 센터) 등 4개임.

12)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5-89호로 기존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 전기통신기자재의 종류(당시 체신부 고시 제88호, 1990.9.3.)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1995-38호, 1995.3.5.)의 내용을 통합 개정했음. 개정된 내용은 형식승인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 개정, 형식승인 대상 장비의 재정립 등이었으며, 전기통신기술기준은 개정하지 못했음.

표 2. 국내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위한 업무 분담 체계(1995. 4. 현재)

Table 2. Role assignments for mutual recognition process in Korea(As of April 1995)

주요 내용	업무 분담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인정을 위한 대상기기 결정기준 검토 • 기술기준,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검토 • 형식승인절차 및 사후관리 제도 검토 • 상대국의 관련 자료수집 및 내용 분석 • 자국의 제도 설명자료 및 협상 제안서 작성 • 기타 협상에 필요한 사항 지원 등 - 양국간의 공동위원회구성 및 운영방안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통신, 데이콤 등 통신사업자 - 통신사업자 및 지정시험기관 -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원 - 정보통신부, 통신개발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정보통신부 주관하에 별도 설정

Communications Commission:연방통신위원회)가 규정하는 Part 68의 등록제도(우리나라의 형식승인제도에 해당됨) 내용중 “투명한 형식승인제도의 대상 장비 및 분류체계방법” 등을 일부 모방·도입하여 1995년 7월 1일부로 개정된 형식승인제도^[12]를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던 형식승인 대상 장비의 문제^[13]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은 줄어들게 되었다[14].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캐나다와도 지속되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이동통신, 위성방송, 공동연구개발 및 무역 등 통신분야에 있어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국간에 통신정책협의회(Korea-Canada Communications Policy Consultation)가 구성된 바 있으며, 캐나다측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한 제의로 현재 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1993년 9월 서울회의를 시작으로 시작된 양국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 협상은 1996년 1월 서울회의에 이르기 까지 3가지의 협안 즉, 첫째, 양국이 독자적인 형식승인제도를 유지하면서 상대국의 시험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는 양국이 상호인정 할 것, 둘째, 형식승인서 상호인정은 양국의 형식승인제도 및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 셋째,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사항 및 이행의무는 실무전문가

로 구성된 실무전담반 회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 될 것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지속적인 협상 노력 결과 1997년 1월, 양국은 형식승인 상호인정(시험성적서 인정 분야)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전화기나 팩스 등 각종 전기통신장비를 수출·입할 때 종전처럼 상대국의 시험기관에서 별도의 시험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다. 양국간의 세부적인 형식승인 상호인정 대상 전기통신장비는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수출하는 품목으로 전화기, 자동응답장치, 팩스, 모뎀, 다기능 전화기, 코드없는 전화기 등 30여개이며,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은 종합정보통신망(ISDN) 단말장치와 데이터 교환기 등이다.

IV. 바람직한 형식승인 상호인정 모델

개방화된 전기통신시장에서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은 국가간 상호호혜주의에 입각한 선진국,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 등의 무역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형식승인 상호인정이 각국마다 처한 환경의 상이함으로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13) 1994년 10월 미국의 CNT사는 Channel Link 장비(원거리에 이격된 대형 IBM 시스템간에 다수의 채널을 연동함으로써 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신 제어장치)에 대한 형식승인 적용 여부를 문의해 왔으나, 그 당시에는 국내 형식승인제도가 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어 위해를 줄 수 있는 장비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각 차이로 마찰이 있었으나, 최근 개정된 규정으로 이 장비는 형식승인 대상 기자재 분류방법 중의 “형식승인 대상 장비가 시스템인 경우 이와 함께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으로 분류되어 형식승인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해 졌음.

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각국간의 사례 분석을 통해 모든 국가가 공히 적용할 수 있는 형식승인 상호인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이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 유도와, 나아가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거나 고려중인 국가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형식승인 상호인정의 추진전략 설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1.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의 기본방향

국가간의 “상호호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형식승인 상호인정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1-2], [8], [15-16].

① 양국 또는 다자간 협상에 의한 정부 차원의 원칙적이고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

② 당사자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반 차원의 협상을 통한 각종 세부사항 협의·조정

③ 합의 사항에 대한 정부간의 협정 체결

④ 상대국과의 형식승인제도(기술기준 포함)를 조화시켜 나아가기 위한 각종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반영 등이다.

2.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모델

위 같은 기본 방향에 입각한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모델은 (그림 2)와 같이 설정될 수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① 형식승인 상호인정 대상국가 선정 및 필요성 제기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위한 첫 단계로, 대상국가는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으로 자국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로 선정되어야 하며, 대상국가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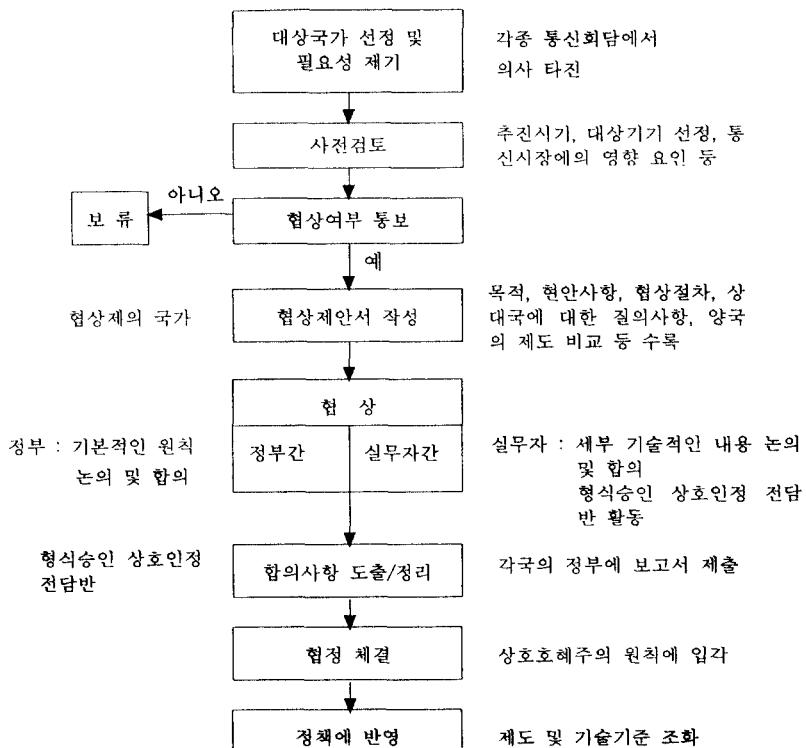


그림 2.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모델
Fig. 2 Process model of mutual recognition

이에 대한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 형식승인 상호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는 각종 통신회담 등에서 상대국에게 그 의사를 타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좋은 예가 북미자유 무역협정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은 자국의 경제성장 촉진 및 통신시장 개방압력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맺음으로써, 3국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상부상조할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를 갖게 되었다. 즉, 대상국가의 이상적인 선정은 자국이 갖는 각종 전기통신 관련 법·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자연적으로 해소해 주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②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에 관한 사전검토

형식승인 상호인정은 정부가 국내 관련기관과의 세부 협의를 통해 주의깊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국 및 상대국의 통신시장 환경 및 형식승인제도 운영 수준 등의 현황 파악은 물론, 형식승인 상호인정이 자국의 통신시장 내지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진시기 그리고 대상기기 선정 등 형식승인 상호인정 관련한 여러 사항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③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한 협상 추진 여부 통보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이후, 그 협상에 대한 여부를 상대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협상 제안서 작성

협상 제안은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먼저 제의한 국가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안서는 양국이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목적, 협약사항, 협상절차(협상방법, 지속적인 정보교환 수단 등), 상대국의 형식승인제도 운영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의사항 및 양국의 형식승인제도를 비교하는 수준의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⑤ 협상 추진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한 통신협상은 역할분담에 따라 정부간 협상과 실무자간 협상으로 구분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간 협상에서는 양국의 관련 통신협상 주무부서간에 상호인정에 대한 원칙론적인 기본 프레임(예, 협상방법, 형식승인 상호인정 범위, 형식승인 상호인정 대상 장비 등)을 설정하는 단계까지의 각종 논의

가 요구되는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실무자간 협상에서는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국이 구성·운영하는 “형식승인 상호인정 전담반”(정부 관계자 참가 가능)을 활용하여 정부간의 협상에서 설정된 기본원칙하에 세부 기술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한다.

그러나, 상대국의 통신환경 내지는 기술수준에 따라 협상방법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쌍무협상은 선진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으로 크므로 여러 국가가 참가하는 다자간 협상이 유리할 것이며, 우리나라와 기술수준이 비슷하거나 뒤떨어진 국가와는 쌍무협상을 통하여 무역장벽 제거에 따른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통신분야의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첨단기술의 공동개발, 현지합작 생산 등을 통한 시장진출기회의 확대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⑥ 합의 사항 도출 및 정리

정부간 및 실무자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된 각종 사항은 “형식승인 상호인정 전담반”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양국의 정부에 제출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대체로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3단계 추진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가. 제1단계

이 단계는 실질적인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위해 자국의 형식승인제도(시험기관 지정·운영 포함) 운영 사실에 대해 상대국으로부터 타당함을 인정받아야 하며, 상대국에게 형식승인제도의 불합리한 점 등을 사전에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나. 제2단계

이 단계는 형식승인 시험기관을 상호인정하고,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를 서로가 인정해야 하며, 또한 세부 추진절차는 (그림 3)과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의 특기사항은 지정시험기관이 상대국에서 제공하는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운영되며, 또한 시험기관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상대국의 평가팀에 의한 현장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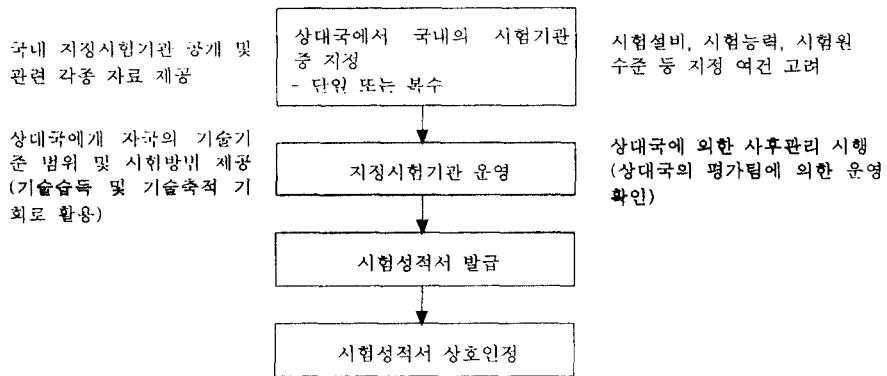


그림 3.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절차
Fig. 3 Mutual recognition procedure of test results

장 겸종절차도 수립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대국에 의한 시험기관의 지정을 통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시에는 IS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관련 제반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가 검토 대상이 된다[9], [16].

다. 제3단계

이 단계는 형식승인서 자체에 대한 상호인정 단계로써 형식승인 상호인정의 실질적인 최종 단계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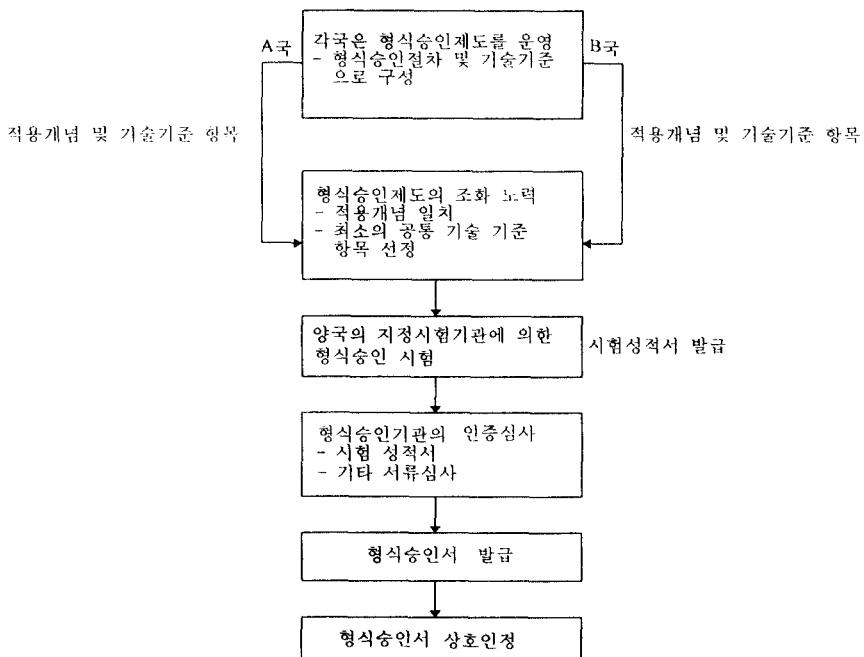


그림 4. 형식승인서 상호인정 절차
Fig. 4 Mutual recognition procedure of certificates

형식승인제도를 상호호해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하나의 조화된 제도로 창출해야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어려운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그 세부적인 추진절차는 (그림 4)와 같다[11], [15].

⑦ 협정체결

협상 대상국간의 통신협상을 통하여 각종 논의사항이 합의되면 이후 협정체결을 맺게 되며, 이 협정체결은 “상호호해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국가가 균형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교역을 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시장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협상 대상국가는 세부 논의사항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각국은 상대국이 협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아울러 부여되어야 한다.

협정체결에 대한 세부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국제 기준인 ISO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져야 하며, APEC의 위탁에 의한 AUSTEL의 협정모델 개발 연구도 이러한 범주내에서 작성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왔다.

⑧ 정책에 반영

협상 대상국은 형식승인 상호인정 협정체결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국가간의 형식승인제도 및 기술기준 조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상대국은 그 반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반영은 우선 물리적으로 상대국과의 통신환경을 유사하게 만드는 작업부터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세부 관련 법령들을 형식승인 상호인정 체계에 맞게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일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추진에 관한 제안사항

앞에서 제시한 일반화된 형식승인 상호인정 모델의 개념에 대한 적용과 함께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의 보다 체계적인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사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관련 연구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한 적용 대상 장비의 범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위한 대상 장비를 유·무선분

야의 형식승인 대상 장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공중전기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장비로만 국한할 것인가?, 공중전기통신망에 위해를 줄 여지가 있는 장비로만 국한할 것인가? 등 여러가지의 경우로 구분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형식승인 상호인정 대상 장비는 상대국과 교역량이 많고 또한 전기통신기술기준을 조화시켜 나가기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고려하여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17].

② 전기통신기술기준의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기통신장비에 적용되는 국가마다의 상이한 전기통신기술기준 차이가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벽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공히 인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기통신기술기준 범위(예, 공중통신망에 대한 위해방지 측면, 통신망 운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전기적안전 보장 측면, 전자파간섭(EMI) 방지 측면으로 구성)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③ 국내·외 시험기관 인정기구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형식승인 시험기관은 국내·외적으로 공신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2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국내에 현재 4개인 형식승인 시험기관을 보다 많이 설립해야 한다. 이것은 상대국에서 지정하는 형식승인 시험기관의 양적 증가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상대국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술 정보와 관련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호주의 NATA와 같이 형식승인 시험기관을 국내·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주도적인 입장에서 국내 위상 제고와 국제경쟁력 향상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④ 형식승인 상호인정 전담반의 체계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진요하다.

형식승인 상호인정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관련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실무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담반 운영이 필수적이며, 모든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한 연구는 각 실무 전문가의 특성에 맞는 역할 분담과 함께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전담반을 통한 활동 결과^{[4)}는 국내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 정책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각 국가간의 협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 반원의 협상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형식승인 상호인정은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상대국과의 무역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수입국의 형식승인 시험기관의 까다로운 시험을 받아야 할 장비를 수출국의 형식승인 시험기관이 이를 대신토록 함으로써, 관련 소요 비용 절감은 물론 수출·입을 보다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방화된 전기통신시장에서 국가간의 보다 자유로운 교역질서를 창출하고 있는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한 개념 정립과 국내·외의 그 추진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식승인 상호인정 모델 정립의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이 모델은 궁극적으로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거나 고려중인 국가들에게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포함하고 있어, 각국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한 일반적인 추진 모델은 앞으로 전개될 각국간의 통신환경 변화에 맞게 적절히 보완될 것이다.

이제 형식승인 상호인정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안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한 한 아직까지 정부와 관련 업계와의 연계가 다소 미흡하나, 지난 1월에 체결되었던 캐나다와의 형식승인 상호인정 계기로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한 관련 업계의 시각도 국력의 결집을 위해서는 정부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일관성 있는

형식승인 상호인정 정책 추진은 물론, 나아가 개방화된 통신시장 환경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국가 위상 정립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약어표]

AALA : American Association of Laboratory Accreditation
APEC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T : Asia Pacific Telecommunity
AUSTEL : Australian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CCT : Consultative Committee on Telecommunications
CS : Customer Satisfaction
EEC :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MI :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EMC :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EU : European Union
ETRI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FCC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HOKLAS : Hong Kong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ISDN :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IC :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MAS : National Measurement Accreditation Service
NATA : National Association of Testing Authorities
NKO/STERIN/STERLAB : Nederlandse Stuushting Boor de Erkenning van Kalibratie en Testlaboratoria en Enspectie Instellingen

14) 이 결과는 형식승인 상호인정 협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1)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의 조화방안, 2) 시험 및 평가 등에 대한 절차의 조화방안, 3) 시험 및 평가에 대한 성적서 양식의 조화방안, 4) 시험성적서 및 인증결정에 대한 평가절차 조화방안, 5) 형식승인서 발급에 대한 통신수단의 조화방안, 6) 시험 및 인증기관에 대한 시험 및 인증의 신청절차 조화방안, 7)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조화방안, 8) 인력에 대한 평가방법의 조화방안, 9) 측정설비의 교정에 대한 평가방법의 조화방안, 10) 환경시험 조건에 대한 통제방법의 조화방안, 11) 이의제기 처리에 대한 방법의 조화방안, 12) 관세에 대한 화방안 등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야 함.

NVLAP: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WEDAC: Swedish Board for Technical Accreditation

TELARC: Testing Laboratory Registration Council of New Zealand

TSS: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Subcommitte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참 고 문 헌

1. OECD, Telecommunications Type Approval: Policies and Procedures for Market Access, ICCP 27, 1992.

2. 김영태, 박기식, “주요국의 단말장치 형식승인제도와 상호인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저널, 제41호, pp. 105~110, 1995. 10.

3. IIR, Teleco Market Access 93, Bangkok, September 1993.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해설, 일본의 전기통신단말 기기 적합인정 기술기준 및 기술적조건(번역본)”, 1996. 3. 15.

5.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993. 11.

6. FCC, Form 730 Application Guide, Registration of telephone and data terminal equipment, May 1995.

7. 김영태, 손홍, “북미지역의 전기통신기술기준 조화를 위한 노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간기술동향, TIS-95-31, 709호, pp. 20~29, 1995. 8. 16.

8. 김영태,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세부 고려사항에 관한 고찰”,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pp. 496~501, 1996. 4.

9. 공업진흥청, ISO/IEC 인증제도에 관한 이론과 실제, pp. 123~135, 1995.

10. APEC, “Proposal that TEL develop a model MRA on conformity assessment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PEC working group on telecommunications 11th meeting, Canada, February 1995.

11. TIA, US and Canadian Telephone Attachment

Regulations, Conformity Assessment and NAFTA Impacts on Telecom Sectors, “Chapter 13, Telecommunications”, October 1992.

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럽의 전기통신 단말장치 공통인증 관련지침(편역), pp. 21~25, 1991. 8.

13. 정보통신부, 한·미통신 양해각서, 1992. 3.

14. 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자체의 형식승인지침, 1995. 7.

15. Kim Young Tae, Sohn Hong, “Efforts to mutual recognition for free trade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PT Journal, Vol. 7 No. 3, pp. 17~19, July 1995.

16. 김영태, 손홍, “단일화된 전기통신시장에서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한 고찰”, 한국통신학회, Vol. 14. No. 1, pp. 783~786, 1995. 7.

17. 김영태, 박기식, 이선화, “형식승인 대상 전기통신 단말장치의 적용현황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0권 제2호, pp. 125~136, 1995. 7.



김 영 태(Young-Tae KIM) 정회원

1963년 9월 10일생

1988년 2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학사)

1996년 3월~현재: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전공 재학중(석사)

1995년 3월~1996년 4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형식승인 상호인정 실무반 의장

1988년 2월~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체계연구실 선임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시험인증연구위원회 위원, 시험인증제도 실무반 의장

※ 주관심분야: 형식승인제도, 형식승인 상호인정, 시험인증제도 분야



박 기 식(Ki-Shik PARK) 정회원

1957년 8월 17일생

1982년 2월: 서울대학교 졸업(학사)

1984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석사)

1995년 8월: 충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박사)

1985년 1월~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체계연구
실 책임연구원/실장,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정보통신표준화 기획전
략연구위원회 의장, 표준화 운영위
원회 위원

1996년 10월~2000년: ITU-T TSAG Vice Chairman,
ITU-T TSAG WP3 Chairman

※주관심분야: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법제도 분야, 기
술 전략기획, 정보통신정책, MIS 분야